
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		

작성부서	(금융위원회) 기업구조개선과, 구조조정지원팀 / (금융감독원) 기업금융개선국		
책임자	유재훈 기업구조개선과장(2156-9961) 김선문 구조조정지원팀장(2156-9881) 장복섭 기업금융개선국장(3145-8370)	담당자	윤우근 사무관(2156-9962) 김현우 사무관(2156-9886) 민재기 팀장(3145-8396)
배포일	2016.1.8.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/ 총 3매 공보실(3145-5786, 5790)

제 목 : 금융위원회, 「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」 개최

- '16.1.8일 15: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상황대응팀('16.1.3일 보도참고자료) 산하 "구조조정 대책반 회의"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,
 - * 참석자: 금융위 사무처장(주제), 구조개선정책관, 기업구조개선과장 /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/ 산은 기업구조조정본부장 / 수은 기업개선담당
 -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, 기촉법 실효에 따른 「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(이하 '협약')」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

1 (해운업) 초대형·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「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(이하 '선박펀드')」 TF 운영 계획 확정

- 산업은행·수출입은행 등 '선박펀드' 참여기관* 전문가들로 구성되며,
 - 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캡코, 산은캐피탈, 무역보험공사, 해양보증보험 등
- '16.1.13일 Kick-off 이후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, 2월 중으로 '선박펀드' 구조 및 운영방안*을 확정할 예정
 - * 정책금융기관간 펀드 투자비율, 적정 투자 선박수 및 투자계획, BBC 계약구조, 해양보증보험의 보증비율 및 적정 자본금 확충방안 등

2 (수시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업체 현황) '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(11개) 중 3개사가 기촉법이 유효한 '15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

-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,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
 - ⇒ '16년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엔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제정 필요

3 (협약 제정) '협약' 제정을 위한 TF 운영 계획 확정

-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, 금감원을 중심으로 '협약' 제정 추진 중(→참고: '협약' 주요 내용)
 - '16.1.15일 '협약' 초안*을 마련하고, '16.1.18일 최종안 확정 예정
 - *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 대부분 반영. 단,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'협약'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 제외 → '협약'으로 기촉법을 대체하는 데 한계
 - ⇒ '16.1.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,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'협약' 가입을 독려할 계획

4 (기업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)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, 금감원이 '16.1.1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

-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,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,
 -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예정

참 고 「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(협약)」 주요 내용

◇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, '협약'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

1. 주요 내용

① 적용 대상

- (금융기관)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'협약' 가입대상으로 하되,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
 -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
- (대상기업) '협약'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

② 기업구조조정 절차

- (부실징후기업 선정) 현재 대기업(신용공여 500억원 이상)에 적용 중인 「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」에 따라 선정
- (협의회 의결기준) 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% 이상 찬성시 의결(75%-rule)
- (반대매수청구)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
 -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

2. 한계점

- ① (절차적 불안정성) '협약'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,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
- ② (특례조항 부재) '협약'으로는 출자전환 특례,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,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

⇒ '협약'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,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제정 필요